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보고서

2024. 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3일, 조경태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8.28.)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9.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조경태의원)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실내 다이빙 풀’에 관한 현재의 법률 적용 현황을 보면,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활동 중 강습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의 ‘수중레저

교육업'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강습을 하는 교육업이 아닌 일반적인 다이빙 풀의 경우는 그 관리가 어려워 안전관리 등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의무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사업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레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짐.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①적용범위와 ②수중레저교육업의 경우 현행법상의 배치의무가 있는 교육자와 안전관리요원을 구분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찬반토론 요지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경태 위원)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중레저사업자 의무에 수중레저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를 추가하여 수중레저 관련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함.

7. 수정안의 요지

규율범위를 수중레저교육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로 수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대신 수중레저교육자가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부대의견

없음

10. 소수의견 요지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이유

규율범위를 수중레저교육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의 배치’로 수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대신 수중레저교육자가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장소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수중레저사업자가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6호).
- 나. 수중레저교육자를 배치해야 하는 수중레저 교육활동 장소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에서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11조제4항).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제1항제6호 중 “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를 “수중레저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 ----- ----- ----- -----.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u>6. 사업장 내 안전 관리요원의 배치</u>	<u>6. 수중레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수중 레저교육자</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u>안전관리요원의 자격과 제3항에</u> ----- ----- ----- ----- -----.	④ ----- -- <u>수중레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u> ----- ----- ----- -----.

법률 제 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수중레저사업자는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11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에 수중레저교육자 배치</u> ② ~ ④ (현행과 같음)